

# 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

European Union Non Tariff Barriers Issue

## 유럽연합,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



### 식품 라벨링 기본 규정으로 (EU) No 1169/2011 적용, 필수 표기 항목과 주요 표기 기준 확인 필요

2023년 1월~ 8월까지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된 한국 식품 중 슬로베니아로 수출된 면류 제품과 독일로 수출된 건조 김 제품이 라벨링 결함 문제가 확인되어 통관 거부된 것이 확인됨. 이에 한국 식품 기업이 유럽연합 국가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을 종합하여 공고함

1. 배경 : 유럽연합 회원국은 기본적으로 [《\(EU\) No 1169/2011 소비자에 대한 식품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법률》](#)을 준수해야 함.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12개의 식품 필수 표기 정보를 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함. 해당 정보는 식품이 판매되는 국가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, 필수 표기 정보는 최소 1.2mm 이상의 폰트를 사용하여 표기해야 함. 이에 본 기사는 《(EU) No 1169/2011》에서 규정하는 식품 라벨의 필수 표기 항목과 일부 주요 항목의 표기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함

2. 대상 품목 :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사전 포장 식품

3. 유럽연합으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라벨링 기준

#### 1) 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기 정보

-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식품명   | ⑦ 유럽연합 내 설립된 식품 영업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|
| ② 성분 목록(첨가물 포함)   | ⑧ 순 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알레르기 정보   | ⑨ 특별한 보관 조건 및/또는 사용 조건              |
| ④ 특정 성분의 함량   | ⑩ (필요한 경우) 사용 지침                    |
| ⑤ 날짜 표시(유효기한/사용기한)  | ⑪ 음료의 알코올 도수(1.2%보다 높은 경우)          |
| ⑥ (정보 명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) 원산지<br>(예: 포장에 국가 국기 또는 유명 랜드마크가 표시되는 제품) | ⑫ <b>영양성분 정보</b>                    |
- ※ EU 규정에 따라 일부 식품은 경고 문구 표시 필요

## 2) 식품 라벨 표기 시 주의해야 하는 주요 항목

구분	주의 사항
<b>성분 및 첨가제 목록</b> (Ingredients list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성분 목록은 '성분(Ingredients)' 단어를 명시하여 구성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적절한 제목을 명시하여 표기해야 함</li> <li>• <b>성분명과 첨가물명은 함량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표기하며, 식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기해야 함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성분 및 첨가물은 <a href="#">부록 VI '중량 내림차순에 따른 성분 표시에 관한 특별 조항'</a>에 따라 표시되어야 함</li> </ul> </li> <li>• 성분명은 《(EU) No 1169/2011》의 제17조와 부록 VI에 규정된 명칭을 사용해야 함</li> </ul>
<b>특정 성분의 함량</b> (Quantity of certain ingredient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식품의 제조 또는 준비 과정에서 사용되는 성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, <b>해당 성분의 함량을 식품 라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함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식품명에 표시되거나 일반적으로 식품명과 연관되는 경우</li> <li>- 라벨에 해당 성분이 단어, 그림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강조된 경우</li> <li>- 식품의 특성을 나타내며, 이름 또는 형태로 인해 혼동될 수 있는 다른 제품과 구별하는 데 필요한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
<b>식품 알레르기 정보</b> (Allergen information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성분 목록(ingredients list)에서 모든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글꼴이나 문자 크기, 배경 색상에 차이를 두어 강조하여 표기해야 함</li> <li>• 성분 목록(ingredients list)이 없는 경우, '함유(contains)' 단어를 사용하여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명칭을 표기해야 함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유럽연합에서 규정하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총 14가지로, <a href="#">부록 II '알레르기나 과민증을 유발하는 물질 또는 제품'</a>에서 확인할 수 있음</li> <li>▶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작성 기준은 '<a href="#">알레르기 유발 물질 EU 지침</a>'을 따름</li> </ul> </li> </ul>
<b>영양성분 정보</b> (Nutrition Information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전 포장된 식품에는 소비자에게 에너지와 영양소의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양성분 라벨(nutrition declaration)이 부착되어야 함</li> <li>• 영양성분 라벨은 식품의 포장 또는 라벨에 직접 표시되어야 하며, 다음의 항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에너지 값(energy value)</li> <li>- 지방, 포화지방, 탄수화물, 설탕, 단백질 및 소금의 함량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기타 자발적 표시 사항 : 불포화지방(단일 또는 다중), 폴리올, 녹말, 단백질, 법적으로 식품 첨가가 허용되는 비타민 및 미네랄 성분</p>

### 출처

EUROPA, Food labelling rules(최종 업데이트 : 2023.08)

EUR-LEX, REGULATION (EU) No 1169/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